

2014학년도 제1차
<제311차 이사회 회의록>

2014. 03. 27.

학교법인 대우학원

학교법인 대우학원

2014학년도 제1차

〈제311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11 인	2 인
재적임원	11 인	2 인
참석임원	11 인	1 인

1. 일 시 : 2014.3.27(목) 07:30 ~ 09:40 (회의소집 통보일 : 2014년 3월 18일)

2. 장 소 : 포스코센터 라운지룸 (포스코 B/D 서관 19층)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임원

- . 이사 : 추호석, 윤성복, 안재환, 문길주, 신희택, 주인욱, 박상일, 신상협, 이영현, 최 홍, 김선용 (11인)
- . 감사 : 전성훈 (1인)

◎ 결석임원

- . 감사 : 배홍기 (1인)

4. 교·직원 출석사항

- . 아주대학교 : 의무부총장겸 의료원장 유희석, 교무처장 박영동, 기획처장 김민구, 기획조정실장 탁승제 (4인)
- . 법인사무처 : 팀장 임홍식, 심지훈 (2인)

5. 개회선언

이 사 장 : 재적이사 열한 분 중 열한 분 전원의 이사님이 참석하셨기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6. 보고사항

이 사 장 : 회순에 따라 아주대학교의 주요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안재환

이사 이영현

(김민구 기획처장이 각각 주요현안 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회순에 따라 안전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 심의안전

상임이사 이영현 : 제311차 이사회 심의 안전은 학법대우 제14-18호(2014.03.18)로 통보한 내용과 같이 의안 제1호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의료원 신규임용 교원 추가 채용계획 승인(안), 의안 제2호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동의(안), 의안 제3호 아주대학교 보수규정 개정(안), 의안 제4호 의료원 보수규정 개정(안), 의안 제5호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의안 제6호 아주대학교 교량실험동 / I.G.C.C.실험동 멸실처분 승인(안), 의안 제7호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 의안 제8호 대우학원 감사 선임(안) 등 8개의 안전을 상정하였습니다.

8. 심의내용

제 1 호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의료원 신규임용 교원 추가 채용계획 승인(안)

이 사 장 :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의료원 신규임용 교원 추가 채용계획 승인(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탁승제 : 아주대학교의료원 신규임용 교원 추가 채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교원채용계획에서 유보되었던 권역외상센터 전담의 및 지원의를 적정 수준으로 확보하고, 비노기종양 진료 및 로봇수술 활성화 등을 통한 진료수익 증대를 위해 특임교원 9명을 추가 증원하고자 합니다. 그 중 8명은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기금 2014년도 국고보조금 14.4억원 중 인건비 충당가능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임교원 총 정원 58명에서 추가증원 9명을 포함하여 2014학년도 특임교원 인력운영계획은 총 67명이며,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은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최 홍 : 권역외상센터 특임교원을 국고보조금 중에서 인건비 충당 가능 범위 내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석

이사장 이영현

에서 증원하시겠다는 내용인데, 여기서 인건비라고 하면 기본급여만을 의미합니까?

의료원장 유희석 : 기본급여뿐만 아니라 인건비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사 주인욱 :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최홍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사 장 : 그러면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의료원 신규임용 교원 추가 채용계획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2 호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동의(안)

이사 장 : 2014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동의(안) 발의.

교무처장 박영동 : 본교 임용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4.1자 신규임용 대상자는 총 12명으로 정년트랙 전임교원 교수 1명,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조교수 5명, 부교수 6명이 되겠습니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우, 교육중점교수 3명, 연구중점교수 3명, 산학협력중점교수 5명입니다. 신규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과 이력내용 및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등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사 박상일 : 임용기간이 4.1부터이기 때문에 강의배정은 이미 끝났을 텐데, 채용되는 교원인력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사(총장) 안재환 : 임용동의를 요청 드린 교원들 중 다수가 아주대학교 특임교원 신분으로 현재 강의를 맡고 있으며, 다른 교원들의 경우에도 학과별로 기 계획된 개설과목의 담당 교원 재조정을 통해 차질없이 강의가 배정될 것입니다.

이사 윤성복 : 전체적으로 교원의 신규임용 심사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문길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본교 교원 신규임용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안재환

이사 이영현

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12명의 교원 신규임용에 대해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이 사 장 : 다음으로 의료원 임용 동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탁승제 : 의료원 교원 신규임용 대상자는 총 1명으로 비정년트랙 연구중점교수로서 만성염증질환연구센터 소속의 조교수 1명입니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연구중점교수로 외국인 연구능력 우수자 초빙공고 결과 3명이 지원하였으며, 이 중 전공심사위원회 서류심사 및 기관장 면접을 통과한 1명을 신규임용 하고자 합니다. 신규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과 이력내용 등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아주대학교의료원 임용 동의(안)에 의견 있으십니까?

이 사 주 인 옥 : 임용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상 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원 신규임용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1명의 교원 신규임용에 대해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동의 내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본	문화콘텐츠학과	주 철 환	교 수	2014.4.1 ~ 정년
	영어영문학과	Katie Mae Klemsen	조교수	2014.4.1 ~ 2016.2.29 (1년 11개월)
	전자공학과	Rong Ran	조교수	2014.4.1 ~ 2016.2.29 (1년 11개월)
	정보컴퓨터공학과	정크리스틴	조교수	2014.4.1 ~ 2016.2.29 (1년 11개월)
	신소재공학과	조 인 선	조교수	2014.4.1 ~ 2016.2.29 (1년 11개월)
교	화학과	Avik Ranjan	조교수	2014.4.1 ~ 2016.2.29 (1년 11개월)
	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안 광 준	부교수	2014.4.1 ~ 2016.2.29 (1년 11개월)
	정보컴퓨터공학과	유 재 희	부교수	2014.4.1 ~ 2016.2.29 (1년 11개월)
	공공정책대학원	윤 영 식	부교수	2014.4.1 ~ 2016.2.29 (1년 11개월)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안지환

이사

이영현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산학협력단	정 명 선	부교수	2014.4.1 ~ 2016.2.29 (1년 11개월)
	산학협력단	이 성 엽	부교수	2014.4.1 ~ 2016.2.29 (1년 11개월)
	기계공학과	윤 백	부교수	2014.4.1 ~ 2016.2.29 (1년 11개월)
의료원	만성염증질환연구센터(耳科)	전 춘 결	조교수	2014.4.1 ~ 2016.3.31 (2년)

- 이상 본교 12명 / 의료원 1명 -

제 3 호 아주대학교 보수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보수규정 개정(안) 발의.

기획처장 김민구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09차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교원인사규정에서 기존의 전임교원을 ‘정년트랙 전임교원’ 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으로 구분함에 따라 보수규정에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보수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최 홍 : 예전 이사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인 것 같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선 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보수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보수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제55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대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제55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대우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호익

이사장 재현

이사 이영현

현행	개정
<p>학원(이하 “법인” 이라 한다)과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 <u>전임교원</u>(이하 “교원” 이라 한다) 및 일반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학원(이하 “법인” 이라 한다)과 아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 <u>정년트랙 전임교원</u>(이하 “교원” 이라 한다) 및 일반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9조(기타사항) ① 교원과 직원이 학교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공이 있는 경우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교원은 총장이 따로 정하고, 직원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할 수 있다.</p> <p>② 강의료, 교재개발, 연구비, 심사비, 자문비, 학생활동지도비, 논문심사및지도비 등 연봉외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③ 비정년외국인교원, 특별임용교원, 조교, 계약직(임시직, 연구원 등)의 보수는 매 회계연도별로 총장이 따로 정하며, 복무요건에 따라 급량비와 유류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9조(기타사항) ① 내지 ② (현행과 같음)</p> <p>③ <u>비정년트랙 전임교원</u>, 비정년외국인교원, 특별임용교원, 조교, 계약직(임시직, 연구원 등)의 보수는 매 회계연도별로 총장이 따로 정하며, 복무요건에 따라 급량비와 유류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제 4 호 의료원 보수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의료원 보수규정 개정(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탁승제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교와 동일한 내용에 대한 안전으로 의료원 보수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보수지급에 관한 근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신 희 택 : 규정과 관련하여 본교와 같은 내용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지환

이사

이영현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주 인 옥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의료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보수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제55조 및 제83조에 따라 아주대학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u>전임교원</u> (이하 “교원”이라 한다) 및 일반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제55조 및 제83조에 따라 아주대학교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u>정년트랙 전임교원</u> (이하 “교원”이라 한다) 및 일반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기타) ① 특별임용교원의 보수는 「의료원 특별임용교원 인사규정」을 따른다. ② 조교, 계약직(임시직, 연구원 등)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교직원이 진료, 수술, 시술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직을 한 경우에는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은 의료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기타) ① (현행과 같음) ② <u>비정년트랙 전임교원</u> , 조교, 계약직(임시직, 연구원 등)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u>(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제 5 호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발의.

기획처장 김민구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설립한 법무대학원에 대해 입학생 감소에 따라 해당 특수대학원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 법무대학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안익환

이사

이영현

원은 2009년 1학기부터 2011년 1학기까지 총 5학기가 운영되었습니다. 2014년 1월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수료생 2명이 최종 졸업을 하였으며, 법무대학원 학생현황은 총 재적인원 15명에 졸업 10명, 제적 5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직제규정 제5조 제3항 제3호 특수대학원 중 법무대학원을 삭제하고자 하며, 관련 내용은 직제규정 신규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박 상 일 : 예전 이사회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이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상 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5조 (기구) ① 본 대학교는 총장, 교무부총장, 의무부총장, 대학, 대학원, 특수학부, 대학교본부, 부속기관, 연구기관, 지원기관,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의료원 및 총장직속기구를 둔다.</p> <p>② 대학에는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과 기초교육대학을 두며, 대학 소속이 없는 특수학부로 국제학부를 둔다.</p> <p>③ 대학원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대학원 : 대학원 2. 전문대학원 :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3. 특수대학원 : 공학대학원, 경영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교육대학원, 국제대학원, 정보통신대 	<p>제5조 (기구) ① 내지 ② (현행과 같음)</p> <p>③ 대학원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대학원 : 대학원 2. 전문대학원 :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3. 특수대학원 : 공학대학원, 경영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교육대학원, 국제대학원, 정보통신대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안지현

이사

이영환

현 행	개 정
<p>학원, 교통·ITS대학원, 보건대학원, 법무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IT융합대학원,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p> <p>④ 대학교본부에는 교무처, 연구처, 학생처, 총무처, 기획처, 입학처 및 대외협력처를 둔다.</p> <p>⑤ 부속기관에 설치하는 기구와 그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무처장 : 평생교육원, 대학교육혁신원, 어학교육원 2. 연구처장 : 중앙도서관, 중앙전산원, 박물관 3. 학생처장 : 생활관, 아주심리상담센터, 종합인력개발원, 보건진료소, 대학언론사 4. 법학전문대학원장 : 법학전문도서관 <p>⑥ 연구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p> <p>⑦ 지원기관은 대학, 대학원, 대학교본부, 부속기관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고, 소속이 없는 지원기관으로 학생군사교육단, 예비군연대, 과학영재교육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과대학 : 공학교육혁신센터 2. 기초교육대학 : 의사소통센터 3. 교육대학원 : 교육대학원부설교육연수원 4. 법학전문대학원 : 중소기업법무센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평가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학습지원센터 5. 교무처 : 아주서비스센터, 교직부 6. 연구처 : 공동기기센터 7. 학생처 : 학생상담센터, 성폭력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사회봉사센터 8. 입학처 : 입학사정센터 9. 대외협력처 : 불어권협력센터, 국제교육센터 10. 중앙도서관 : 출판부 11. 대학교육혁신원 :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평가인증센터, 융복합교육센터, 산학연교육센터, 비교과교육지원센터 12. 종합인력개발원 : 사회진출센터, 여대생커리 	<p>학원, 교통·ITS대학원, 보건대학원, <삭 제>, 임상치의학대학원, IT융합대학원,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p> <p>④ 내지 ⑨ (현행과 같음)</p>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장

김지현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어개발센터 13. 대학언론사 : 학보사, 교육방송국, 영자신문사 ⑧ 총장직속기구로 대학발전본부, 홍보실 및 비서실을 둔다. ⑨ 교육·연구 진흥과 학교 발전에 필요한 특수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1항 내지 제8항의 기구 외에 특별기구를 학칙에 둘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6 호 아주대학교 교량실험동 / I.G.C.C.실험동 멸실처분 승인(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교량실험동 / I.G.C.C.실험동 멸실처분 승인(안) 발의.

기획처장 김민구 : 교내 미관 개선을 위해 노후화로 인한 낙후된 교량실험동 및 I.G.C.C.실험동을 멸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교량실험동의 경우, 건설교통부 주관 건설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토목공학과에서 공기단축형 복합구조시스템 개발 과제 수행에 필요한 조립식 교량 연구수행 및 실험 강의 목적으로 2007년 신축된 건물입니다. 교량 건설 도중 공사장 주변의 교통 체증을 최소화하고 교량 건설비용 및 기간 단축을 위한 교량 조립식 공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10.9.1부로 연구기간이 종료되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건물 노후 및 이로 인한 파손 발생으로 해당건물을 철거하고자 합니다.

I.G.C.C.실험동은 석탄을 고온·고압 아래에서 산소 및 수증기와 반응시켜 합성가스(CO, H₂)를 생산하고, 이를 원료로 복합발전을 하는 원리를 이용한 친환경 청정석탄발전 기술을 연구하는 실험동으로 주 사용기관인 고등기술연구원이 해당 건물을 본원이 있는 용인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를 본교에서 철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멸실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윤 성 복 :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안태환

이사

이영현

이 사 문 길 주 :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교량실험동 / I.G.C.C.실험동 멸실처분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교량실험동 / I.G.C.C.실험동 멸실처분(안)

▶ 아주대학교 교량실험동 / I.G.C.C.실험동 개요

구 분	교량실험동	I.G.C.C.실험동	비 고
연면적	600m ²	660.39m ²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철골구조	
층 수	지상 1층	지상 2층	
사용승인	2007.11	2005.12	
취득일자 ^{주1)}	-	2006.03.27	
취득가액 ^{주2)}	317,800,000원	388,675,948원	
주용도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주1) 취득일자의 경우 학교 건물 명세서 기준이며, 교량실험동의 경우 미등기로 취득일자 없음

주2) 교량실험동의 경우 취득가액이 아닌 총 지출금액임

제 7 호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 발의.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보직 중 2014.3.1자로 보직 사임서를 제출한 총무처장의 후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학교 장의 제청을 받아 총무처장에 경영학과 이주희 교수를 임명하고자 동의 요청 드립니다.

(참석임원 첨부된 별지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석

이사

안 재환

이사 이영현

이 사 신 회 택 : 이력사항을 살펴보니 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최 홍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11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1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2014.4.1부로 해당 보직교원에 대해 임명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보직 임명 동의 내용

보 직 명	소 속	직 급	성 명	임명요청일자	비 고
총무처장	경영학과	교 수	이 주 희	2014.4.1부	신규(2년)

제 8 호 대우학원 감사 선임(안)

이 사 장 : 대우학원 감사 선임(안) 발의.

이 사 장 : 본 법인 감사 중 2014.5.12부로 임기 만료 예정인 전성훈 감사의 후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사와는 달리 감사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는데 전성훈 감사는 2011.5월 중임이 되신 분으로 더 이상 감사로 선임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성훈 감사의 후임과 관련하여 정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선임에 앞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셨던 이영현 상임이사께서 후보자 추천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인 이영현 상임이사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과정과 회의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다.)

이 사 장 :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과정을 잘 들었습니다. 후보로 추천된 분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추천된 분도 계실 것으로 그러한 분들의 명예를 존중하고자 개방감사 후보자 명단, 선임 과정 및 득표수는 비공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

재환

이사

이영현

(대우학원 개방감사 후보자 명단, 선임 과정 및 득표수는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것으로 참석이사 11인 전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대우학원 감사 선임(안)을 의결한 결과, 참석이사 11인의 표결에 따라 문휘창 후보를 관할청 승인일로부터 임기 3년의 대우학원 감사로 선임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이후 법인사무처에서 문휘창 후보의 감사 취임승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대우학원 신·구 임원 대비표

현 행				변 경			
직 명	성 명	임 기	비 고	직 명	성 명	임 기	비 고
이사장	추 호 석	2011.9.18 ~ 2015.9.17	이사장임기 2013.4.19~	이사장	추 호 석	2011.9.18 ~ 2015.9.17	이사장임기 2013.4.19~
이 사	윤 성 복	2013.4.28 ~ 2017.4.27		이 사	윤 성 복	2013.4.28 ~ 2017.4.27	
이 사	안 재 환	2012.3.4 ~ 2016.3.3	교육이사	이 사	안 재 환	2012.3.4 ~ 2016.3.3	교육이사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 13 -

안재환

이사 이영현

현행				변경			
이사	문길주	2012.3.31 ~ 2016.3.30		이사	문길주	2012.3.31 ~ 2016.3.30	
이사	신희택	2014.2.15 ~ 2018.2.14	교육이사	이사	신희택	2014.2.15 ~ 2018.2.14	교육이사
이사	주인옥	2013.4.19 ~ 2017.4.18	교육이사	이사	주인옥	2013.4.19 ~ 2017.4.18	교육이사
이사	박상일	2012.3.19 ~ 2016.3.18	개방이사	이사	박상일	2012.3.19 ~ 2016.3.18	개방이사
이사	신상협	2012.3.19 ~ 2016.3.18	교육이사 개방이사	이사	신상협	2012.3.19 ~ 2016.3.18	교육이사 개방이사
이사	이영현	2013.4.19 ~ 2017.4.18		이사	이영현	2013.4.19 ~ 2017.4.18	
이사	최홍	2012.3.19 ~ 2016.3.18	개방이사	이사	최홍	2012.3.19 ~ 2016.3.18	개방이사
이사	김선용	2012.2.7 ~ 2016.2.6		이사	김선용	2012.2.7 ~ 2016.2.6	
감사	전성훈	2011.5.13 ~ 2014.5.12	개방감사	감사	문휘창	관할청승인일로부터 3년	개방감사
감사	배홍기	2013.4.28 ~ 2016.4.27		감사	배홍기	2013.4.28 ~ 2016.4.27	

9.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선임 의결

이 사장 : 제311차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사님들께서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신희택 : 이사장님과 안재환 이사님 그리고 이영현 이사님을 선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석임원 11인 전원이 신희택 이사의 의견에 찬성하다.)

이 사장 : 그러면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로 이사장 추호석, 이사 안재환, 이사 이영현을 참석임원의 호선으로 선임하였음을 의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안재환 이사 이영현

10. 폐회선언

이 사장 : 이상과 같이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므로 제311차 이사회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9시 40분에 산회를 선포하고 위 의결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임원 전원이 회의록에 자필로 서명하다.)

2014 년 3 월 27 일

이사장	추 호 석	추 호 석
이사	윤 성 복	윤 성 복
이사	안 재 환	안 재 환
이사	문 길 주	문 길 주
이사	신 희 택	신 희 택
이사	주 인 옥	주 인 옥
이사	박 상 일	박 상 일
이사	신 상 협	신 상 협
이사	이 영 현	이 영 현
이사	최 홍	최 홍
이사	김 선 용	김 선 용
감사	전 성 훈	전 성 훈